

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25. 12. 31.자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, 당연직 위원 직위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유지·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현행화(제18조제3항)
 - (기존) 행정안전국장 ➡ (변경) 행정안전교육국장
 - (기존) 도시디자인국장 ➡ (변경) 도시주택국장
-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(제19조)
 - (기존) 2025년 12월 31일 ➡ (변경) 2030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행정안전국장, 도시디자인국장”을 “행정안전교육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행정안전교육국
입 안 자	자치행정과장	김 행 련
	마을지원팀장	최 미 선
	담 당 자 (연락처)	송 유 리 (481-3095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<u>행정안전국장, 도시디자인국장</u>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양성 평등 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</p> <p>제19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로 한다.</p>	<p>제18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행정안전교육국장, 도시주택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9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</p>